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회 계 과

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정기-2차)
(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)

구 미 시

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정기-2차)

의 안 번 호	

제출연월일 : 2026. 10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(약칭: 바이오가스법)(‘23.12.31. 시행) 제4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함

○ 바이오가스법 제5조 및 제6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및 달성하여야 하며 미달성 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임[시행일(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) 2025년 1월 1일]

○ 현재 구미하수처리장 내 유기성폐기물(하수슬러지, 음식물폐기물, 분뇨, 가축분뇨)을 개별처리하고 있어 도시가스 등으로 활용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유기성폐기물의 통합처리 필요

○ 유기성 폐기물 처리의 통합화·지하화를 통해 에너지 생산형 자원순환 시설 구축 및 바이오가스 개질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과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○ 위　　치 : 칠곡군 석적읍 중리 412번지 일원

○ 대　　상 : 건물 연면적 22,988㎡(지하3층, 지상3층)

• 시설용량 : 유기성 폐기물 총 575톤/일

○ 기준가격 : 약 1,909억원(공사비, 시설부대경비 등)

○ 사 업 비 : 약 1,909억원

○ 사업기간 : 2022 ~ 2031년(10년)

○ 주요시설 : 관리동(사무실, 전기실, 숙직실 등), 기계실, 지하설비 등

○ 추진현황

- 시범사업 공모 선정(환경부) : ‘22. 2. 14.
-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: ‘22. 3. 25.
-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(기획재정부) : ‘22. 8. 24.
- 제안서 타당성 검토 완료(공공투자관리센터) : ‘23. 1. 18.
- 시의회 동의안 의결 : ‘23. 4. 18.
- 제3자 공고 : ‘23. 10. 4.
-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: ‘24. 1. 22.
- 기본설계VE 및 실무협상 착수 : ‘24. 10. 24.
- 시설용량 및 총사업비 변경협의(기재부) : ‘24. 12월
- 실시설계,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병행추진 : ‘25. 1. ~ ‘26. 4.
- 실시협상 및 실시협약(안) 검토 : ‘25. 8월
- 실시협약(안) 및 사업자지정(안)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(원안의결) : ‘26. 1월
- 실시협약 체결 : ‘26. 3월

○ 향후추진계획

- 실시설계VE요청 : ‘26. 8월
- 실시계획 승인 : ‘27. 4월
- 공사 착공 : ‘27. 7월
- 공사 준공 : ‘31. 6월

3. 근거법령

○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

○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

○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

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정기-2차)

회계명 : 하수도특별회계 (단위 : ㎡, 백만원)

구 분			건수	수량	금액
취득	계		1건		190,900
	1.매입	토지 건물 기타			
	2.교환으로 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
	3.기타 취득	토지 건물 기타	1건	22,988	190,9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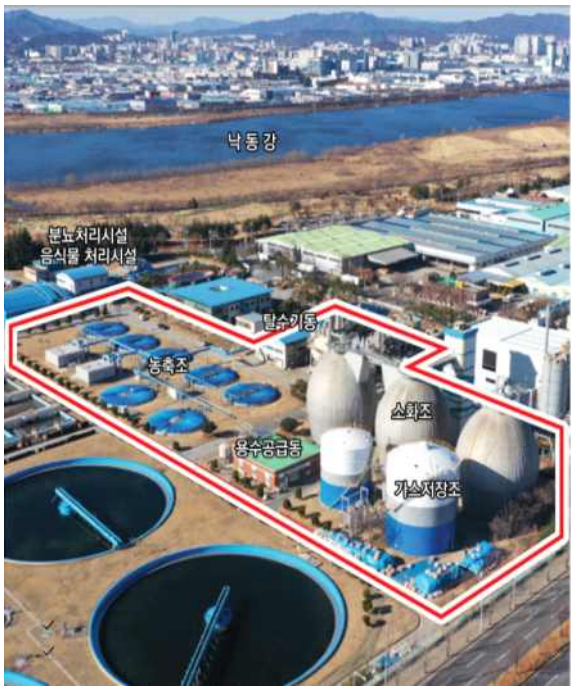
취득 재산목록

회계명 : 하수도특별회계 (단위 : ㎡, 백만원)

구분	재 산 의 표 시			추정가액	취득 매각 시기	사 유	재산 소유자	비고
	재산 구분	소 재 지	수 량(㎡)					
계			22,988	190,900				
취득	건물	칠곡군 석적읍 중리 412번지 일원	22,988	190,900	2031년	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	구미시	

위 치 도



사업 시행 전	사업 시행 후
	

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정기-2차) 비용추계서
(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)

Ⅰ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투자사업(BTO-a)에 따른 세출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'25년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
- 기본설계VE 및 실시협약 결과 바탕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출	◦ 공사비 등	33,188	45,161	54,655	41,910	15,986	190,9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 비	8,240	28,166	34,127	26,111	9,059	105,703
도 비	618	2,112	2,559	1,959	680	7,928
시 비	1,424	4,866	5,896	4,511	1,566	18,263
민 간	22,623	9,050	10,901	8,433	4,371	55,378
기 타(칠곡)	283	967	1,172	896	310	3,628
합 계	33,188	45,161	54,655	41,910	15,986	190,900

5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실시설계VE 등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.

6. 작성자

- 하수과 하수시설팀 윤성진(054-480-4524)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금 액	산출내역	비 고
계	190,900		
조사비	116	- 조사비 : 116,000,000원	
설계비	5,925	- 설계비 : 5,925,000,000원	
공사비	166,000	- 공사비 : 166,000,000,000원	
부대비	8,980	- 부대비 : 8,980,000,000원 (건설사업관리비, 설계안정성검토비, 환경영향 평가비,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진단비용 등)	
제세공과금	8,487	- 제세공과금 : 8,487,000,000원	
영업준비금	1,392	- 영업준비금 : 1,392,000,000원 (신주발행비, 개업비, 개업비품비)	

관계법령

□「지방자치법」

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~ 5. 생략

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

7. ~ 11. 생략

② 생략

□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38조(중요재산, 공공시설의 취득·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) ① 법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"이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(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

② ~ ④ 생략

□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공유재산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

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

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□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

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
2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

□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

제12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 가. 취득의 경우: 10억원
 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
2.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 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1천제곱미터
 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2천제곱미터

소 관 부 서		회 계 과 (하 수 과)
입 안 자	과 장	임 웅 건 (김 종 덕)
	팀 장	전 유 향 (이 문 환)
	담 당 자	박 재 경 (480-5072) (윤 성 진) (480-4524)